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4. 11. 12 선고 2024가단3179 판결 [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2024. 10. 15.

판결 선고2024. 11. 12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7. 12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최은주

별지